

8.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施行令制定(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4-139號 1994. 5. 30

1. 제정이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722호, '94. 1.7. 공포)이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부장관이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광역개발권역지정안에는 권역의 범위, 개발의 기본목표, 지정기간, 개발사업의 개요등을 명시토록 하여 권역지정시 관계부처에서 미리 개발방향 및 개발사업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나. 광역개발계획에는 광역개발사업의 내용, 사업시행방법, 투자소요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도 명시토록 함. 이 경우 개발방법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부장관,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직할시 및 도의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건설부장관이 직할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토록 하되, 각 시·도별로 총면적의 10퍼

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주거지역내 토지(지목이 “대”인 토지)의 평균지가, 제조업종사인구 비율을 비교한 후 2개 이상의 기준에서 전국적으로 하위 2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지역
 - ㉡ 종래의 지역산업이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교통망, 지리적 위치등이 인근 도시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 경우 개발사업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개발자의 부담으로 시행토록 함)
- 마.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대상사업의 범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함.
- 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수립하되,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토록 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 선정기준도 제시토록 함.
-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할 경우 그 출자비율은 지역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액의 5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함.
- 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단지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대신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공업단지, 관광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및 유통시설 및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시설로 하고, 이 경우 5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행자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시·도별 자체자금 확보액과 지원효과,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에 따라 배부하도록 하고, 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히 열위에 있는 시·도에 대한 우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차. 중소기업자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행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카.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내에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타.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와 제공, 기술지도 및 연수, 공동전시 판매장 운영, 창업보육사업등을 담당하도록 함.
- 파.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절차를 정하고,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 다. 예고 항목중 (가)~(아)에 대하여는 건설부국토계획과(전화번호 500-2836), (자)~(파)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 지방중소기업과(전화번호 500-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면 부실시공 ‘혹시’하면 성실시공